

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



수신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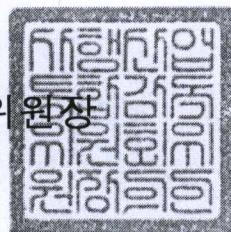
(경유)

제목 신고서 회신

귀 대책위에서 2015년 7월 7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별첨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.

별첨 : 신고서 회신 1부. 끝.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



주무관

장대현

행정사무관

방강덕

감독지도과장

김형재

사행산업통합 2015. 7. 21.

감독위원회 박성기
무처장

협조자

시행 감독지도과-314

(2015. 7. 21.)

접수

우 110-034 서울 종로구 효자로39(창성동) 정부서울청사별관4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감독지도과

전화번호 02-3704-0585 팩스번호 02-3704-0579 / dhjang76@mcst.go.kr / 비공개(1)

신고서 회신

- 귀 단체에서 2015년 7월 7일 신고하신 내용 중 상당수는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(이하 “사감위”) 이외 기관에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실 확인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·처벌 등을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다음 기관에 2015년 7월 9일 이첩하였습니다. 이첩을 받은 기관에서는 관련 법령 등의 처리절차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 등 처리사항에 대한 회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.

- 다음 -

- 이첩대상기관 및 관련 업무 : 방통위(방송법 협찬광고), 금융위(대부업법 사금융광고 등), 행정자치부(옥외광고물법 사금융 등 광고), 농림축산식품부(한국마사회법 위반사항 등), 여성가족부(청소년보호법 청소년출입제한 등), 경찰청(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경품제공 등), 강남·용산구청(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접수·과태료부과·고발 등 처리)

- 다만, 사행산업 영업장의 청소년 출입문제는 「청소년보호법」상 여성가족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소관이나 사감위는 이와는 별개로 사행산업 영업장에 대한 청소년 출입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하여 「청소년보호법」 등의 청소년 출입제한조치보다 강화된 규제조치를 사감위의 권고 형식으로 가능한 신속히 검토할 계획입니다.
- 사행산업사업자의 경품제공이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시정조치·처벌 등에 대한 판단은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상 경찰청장 및 관련 지방

경찰청장의 소관사항이나, 사감위는 이와 별개로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상 사행산업사업자의 경품제공에 대하여 사감위의 「사행산업에 관한 광고·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·감독규칙(이하 “광고·선전규칙”, ‘15.7.1.부터 시행)」에 따라 경품제공 광고·선전물에 대한 사감위의 사전 심사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

- 사감위는 위의 조치 이외 신고내용의 위법여부 등의 사실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·처벌 등과는 별도로 사감위 업무와 관련 있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마사회에 가능한 한 신속히 시정(개선)조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.

- 다음 -

- 용산장외발매소 건물(사무실 등) 사용 : 교회 예배용 사용 불허
- 강남장외발매소 건물(사무실 등) 사용 : 영업일에 아이돌 등 펜미팅(청소년 출입 가능)행사 등 대관 불허
- 모든 장외발매소 : 청소년 출입금지 철저 관리
-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·선전(경품제공 포함) : 사감위의 「광고·선전규칙(‘15.7.1.부터 시행)」에 따라 규제
 - ※ 경품제공 시 광고·선전물 사전 심사제 도입 검토
 - ※ 다만, 버스광고물 등은 「광고·선전규칙(‘15.7.1.부터 시행)」 시행 이전 사감위 「광고자율심의규정」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임.
- 영업장 내 주류반입 및 음주자 출입 제한 : 즉시 강화
 - ※ 현재도 시행 중
- 영업장内外 사금융 제공 등 광고물 방치 : 즉시 강화
 - ※ 현재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철거 요청 등(불법 자체 제거 포함)을 하도록 행정지도 중